

# 경협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 및 활용 방안

이광희 / KOTRA 북한실 조사부장

**O** 리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 추진으로 우리 민간 기업의 대북 진출 사업이 점차 활력을 띠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정경 분리 원칙을 천명함에 따라 현대그룹을 비롯한 대기업과 일부 중소기업들의 대북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나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같은 대규모 경협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 제품·섬유류 등의 임가공 사업과 북한 내에 한국기업전용공단 조성 사업 등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외에도 남북 교역 금액과 품목 수가 늘어나고 있고, 대북 경협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수도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북미간의 금창리 지하 시설 의혹 부문에 대한 사찰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조치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남북 경협 분위기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자 우리 기업의 대북 진출에 대한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남북 경협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단계에 진입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들

많다.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 북한 진출을 서두르고 있지만, 남북한간 무역협정이나 투자보장협정과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 기업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또한 남북한간에 거래되는 반출입 물량이 적어서 그렇겠지만, 해상 운송의 구조적인 문제로 남북한간 물품 반출입에 따른 물류비가 거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것 등이 풀어야 할 주요 과제들 가운데 일부이다.

남북 경협 확대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나 물류비를 줄이는 문제는 쉽게 풀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제로 일부 기업들이 남북 교역과 임가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대북 경협 사업에 참여할 기업의 수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남북한간 민간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대북경협기금을 시급히 조성하여 우리 기업들이 중장기 저리로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대북 경협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주어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이미 우리 정부는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

남북한간 민간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대북경협기금을 시급히 조성하여 우리 기업들이 중장기 저리로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대북 경협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주어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이미 우리 정부는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해 남북경협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고, 개도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외투자기금,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등 각종 기금을 정부 출연 방식으로 조성·운영하고 있다.

해 남북경협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고 개도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외투자기금,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등 각종 기금을 정부 출연 방식으로 조성·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금 가운데 일부를 우리 민간 기업이 대북 경협 사업을 추진할 때 지원·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반출입·임가공시 '남북협력기금' 활용 가능성

우리 기업들이 대북 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자금 부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활용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는 자금이 '남북협력기금'이다. 이 기금은

1991년부터 거의 100% 정부 출연으로 조성되어 현재 4,400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1,700억 원 정도가 활용이 가능한 자금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활용 가능한 자금도 대북 식량 지원 등 공공 성격의 경협 자금으로만 쓸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민간 기업의 대북 사업 추진에는 전용하여 쓸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는 것으로 알려

〈표〉 정부의 남북경협기금 조성·운영 현황

구분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기금 규모	4,420억 원	1조 3,280억 원	5,700억 원/4,890억 원
기금 성격	남북한간의 경제 교류 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남북경협기금	개도국의 개발 수요를 충족·지원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가운데 양허성 조건의 차관 형태로 제공되는 양자간 유상 원조 프로그램	중소기업의 생산 기반 고도화와 경영 체질 개선을 위한 자금 / 성장 유망 중소기업에 필요한 운전 자금 지원
지원 대상	대북 식량, KEDO 대출 등 주로 공공 성격의 사업에 지원	1996년 1인당 GNP 5,435 달러 이하 국가를 상대로 차관 지원	중소기업의 구조 조정 지원/성장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 및 특수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지원 조건	정부의 대북 경협 지원 정책 방향에 따라 다소 융통성있게 적용	· 이자율: 대상국의 소득 수준 및 사업 성격에 따라 연 1.0~5.0% 까지 차등 적용 · 상환 기간: 10~30 년(거치 기간 5~10 년 포함)	· 이자율: 연 8.5% · 상환 기간: 3~8 년(1~3 년 거치 기간 포함) · 대출 한도: 5억~20억 원

지고 있다.

그러나 이 자금은 성격 자체가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자금이므로, 우리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는 대북 식량이나 비료 지원, KEDO 대출과 같은 공공 성격외에도

민간 기업의 대북 경협 사업 추진시에도 전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민간 차원의 남북한 교류 확대는 분단 50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남북한간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상호 신뢰감을 형성함으로써, 전쟁 발발 억제 효과라는 광의의 안보 비용 및 통일의 전령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민간 기업으로의 남북 협력기금의 지원 및 활용 방안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기금의 일부가 우리 기업의 대북 사업 추진 자금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 지원 조건이나 분야를 엄선하여 지원자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북 사업을 추진할 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자금 동원 능력 및 정보력이 월등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자금의 중소기업으로의 지원은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남북간 물품 반출입 자금이나 대북 임가공 사업을 추진할 때에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민간 기업이나 유관 기관·단체 등에서 대북 농산물 계약 재배나 한국기업전

우리 기업들이 대북 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자금 부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활용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는 자금이 '남북협력기금'이다. 남북간 물품 반출입 자금이나 대북 임가공 사업을 추진할 때에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민간 기업이나 유관 기관·단체 등에서 대북 농산물 계약 재배나 한국기업전용공단 조성에 필요한 자금, 임가공을 위한 원자재 반출 자금, 생산 설비 이전 자금 등에도 이 자금이 융자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용공단 조성에 필요한 자금, 임가공을 위한 원자재 반출 자금, 생산 설비 이전 자금 등에도 이 자금이 융자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이 자금의 일부를 별도로 할애하여 남북경협보험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 교역이나 임가공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기업들이 현재 안고 있는 위험 부담을 담보해 줄 아무런 무역보험이나 연불수출보험이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재 남북한 당국간에 무역 협정이나 투자보장협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전적으로 자신의 비용과 위험 부담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보험기금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활용, 대북 유휴 설비 이전**

우리 정부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자금도 대북 경협 사업 자금으로 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은 중소기업의 생산 기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은 IMF 외환 위기 이후 우리 중소기업들이 일부 과다 보유하고 있는 유틸 설비를 북한으로 이전할 때나 대북 임가공 사업을 전개할 때, 중소기업 구조 조정이나 기업 경영 안정화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북전용공단 조성이 이루어질 경우, 이 자금의 일부를 특별히 할애하여 중소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틸 설비를 집단으로 이전토록 지원해준다면, 기업 구조 조정과 대북 경험 확대를 동시에 실현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우, 이 자금의 일부를 특별히 할애하여 중소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틸 설비를 집단으로 이전토록 지원해준다면, 기업 구조 조정과 대북 경험 확대를 동시에 실현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반 고도화와 경영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이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사업성과 기술력이 우수하고 국민 경제에의 기여도가 높은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에 필요한 운전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이다.

이 두 자금의 총액은 1조 6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자율은 이 자금 모두 연 8.5%이고 상환 기간은 대출 사업의 성격에 따라 1~3년의 거치 기간을 포함하여 최단 3년에서 최장 8년까지로 되어 있다. 대출 한도액은 기업당 최저 5억 원에서 최고 20억 원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 자금은 IMF 외환 위기 이후 우리 중소기업들이 일부 과다 보유하고 있는 유틸 설비를 북한으로 이전할 때나 대북 임가공 사업을 전개할 때, 중소기업 구조 조정이나 기업 경영 안정화 차원에서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북전용공단 조성이 이루어질

### ‘대외경제협력기금’ 활용, 대북 SOC 지원

또한 우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 가운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자금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다. 물론 이 자금은 성격상 우리 기업이 직접적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먼저 북한 당국과 우리 정부간의 차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에서의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개도국으로부터의 경제 협력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87년도에 이 기금을 설치하여 현재 1조 3,000억 원 정도의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자금은 개도국의 개발 수요를 충족·지원하기 위하여 공적개발원조(ODA) 가운데 양허성 조건의 차관 형태로 제공되는 양자간 유상 원조 성격의 자금이다. 따라서 소득 수준이나 사업 성격에 따라 차관 자금의 이자율을 최저 연 1%에서 최고 5%까지 차등 적용하고, 상환 기간도 거치 기간 5년에서 10년간을 포함하여 최단 10년에서 최장 30년간으로 할 수 있어 차관 수혜국이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자금을 대북경협자금으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당국이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 정부에 지원해줄 것을 요청해야 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을 다른 개도국과 마찬가지로 개도국으로 인정하여 EDCF 차관 제공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금의 용도·차관과 관련하여 북한측이 저야 할 법적 의무 사항 등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는 남북 당국간 EDCF차관협정이 체결되면 이 기금의 성격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수출 유발 효과가 크고 국산화율이 높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에 대한 차관 지원이다. 즉, TDx 등 통신망 사업과 공항, 항만 등 국산 기자재 수출 효과가 큰 사업, 송배전 및 발전 설비 등 전력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유망시된다. 둘째,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점을 감안, 비료나 농기계 생산 설비 확충 사업, 씨종자 개량 사업 등 농업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셋째, 병원 설립, 의료 기기 등 보건 위생 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넷째,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오염 방지 시설 설치 등 환경 관련 사업에도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정보 보유 기금 가운데 활용 가능한 기금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다. 자금의 용도·차관과 관련하여 북한측이 저야 할 법적 의무 사항 등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하는 남북 당국간 EDCF차관협정이 체결되면 이 기금의 성격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수출 유발 효과가 크고 국산화율이 높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에 대한 차관 지원이다. 둘째,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점을 감안, 비료나 농기계 생산 설비 확충 사업, 씨종자 개량 사업 등 농업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셋째, 병원 설립, 의료 기기 등 보건 위생 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넷째,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오염 방지 시설 설치 등 환경 관련 사업에도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 경협 활성화를 위한 '남북민간경협기금' 조성

기존의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본격적인 남북 경협 사업 전개에 대비하여 국내에 '남북민간경제협력기금'을 별도로 조성하거나 국제 금융 기구 등에 '북한개발기금'을 미국, 일본 등의 협조를 받아 마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한국 내에 남북민간경협기금이 조성될 경우, 이 기금은 기존의 남북협력기금과는 성격을 달리하여 순수 민간 기업들이 대북 사업을 전개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금은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 출연 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연적이나 장기적으로는 유관 기관간, 단체, 기업 등 민간 출원이 주류를 이루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성한 기금이 대북 식량 지원이나 비료 등을 일회성으로 지원하여 소진하는 것보다 민간 기업들이 소정의 이자를 부담하고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형태로 운영하여 장기적으로 기금이

기존의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본격적인 남북 경협 사업 전개에 대비하여 국내에 '남북민간경제협력기금'을 별도로 조성하거나 국제 금융 기구 등에 '북한개발기금'을 미국, 일본 등의 협조를 받아 마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이렇게 조성한 기금은 특정 기업이나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고 다수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금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이 기금은 대북 사업에 전개함에 있어서 우리 기업간의 과당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따져가며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확대 운영·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일본 등의 협조로 국제 금융 기구 등에 별도의 '북한개발기금'을 마련할 경우에도 일회성의 단발성 사업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자금 활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마련한 기금은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장차 국민 부담으로 올 통일 비용을 줄인다는 차원에서라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별도로 기금을 당장 마련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것이므로, 이미 조성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기금 일부를 떼어내어 우리 기업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기업들이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며, 북한 지역에서 임가공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 사업을 전개하는 우리 기업들은 비즈니스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완전히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남북한간의 직접 외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물류비는 엄청나게 높으며, 대북 사업에 대한 보험도 인수가 되지 않은 실정이다. 남북한간의 직접 통신도 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대북

비즈니스 환경은 대부분이 북한 당국과의 합의에 의해서만 풀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이다.

그러나 대북 거래 기업들이 안고 있는 자금 부담 문제와 보험 부보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 당국의 의지만 있으면 곧바로 해결이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 당국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대북 경협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도 시급히 '남북민간경제협력기금'을 마련하거나, 기존 기금 가운데 일부를 할애하여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조성한 기금은 특정 기업이나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고 다수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금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이 기금은 대북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우리 기업간의 과당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따져가며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統**